##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71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 박홍근 · 권칠승 · 김정호

남인순 · 이탄희 · 이학영

이헌승 · 전용기 · 한정애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3R 원칙(Refinement, Reduction, Replace ment)의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미약하여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특히 최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관련 실험을 계기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심의 후 윤리위의 실험 감독 등 윤리위의 심의·감독 역할 강화가요구되고 있음.

이에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후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험이 심 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구자 변경, 실험동물 수 증가, 연구장소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신설).
- 나. 윤리위의 심의 후 감독을 제도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3 신설).
- 다. 윤리위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상한(현행 15명)을 폐지함 (안 제27조).
- 라. 윤리위 위원의 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전문위원이 정규 심의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 마. 모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3 신설).
- 바. 봉사동물을 사용한 불법 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6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심의"를 "심의 및 변경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으로 한다.

- 2. 제1호의 심의, 변경 심의 이후 감독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변경 심의)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연구장소의 변경, 사용 실험동물 수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안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윤리위원회에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의 변경 심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26조의3(심의 후 감독)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실험의 내용이 제26조의2제1항의 변경 심의 사항에 해

당할 경우 즉시 실험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해당 실험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험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심의를 받기 이전에는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실험을 다시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상 15명 이하"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전문위원 심의)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진행하도록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심의를 진행한 경우 심의 결과를 즉시 제26조제1항제1호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

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친 실험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심의 및 변경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이미 심의를 거친 실험의 변경심의 및 진행상황 보고. 다만, 제26조의2제1항의 사항은 제외한다.

#### 2. 종료 보고

-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전문 위원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 심의의 방법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3(윤리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의무)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원과 연구자, 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하여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으로,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 및 제27조"를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으로 한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방해 또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동 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 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4.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5. 제2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 ,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u>심의</u>	1 <u>심의 및 변경</u>
	<u>심의</u>
<u>&lt;신 설&gt;</u>	<u>2. 제1호의 심의, 변경 심의 이</u>
	후 감독
<u>2</u> .· <u>3</u> . (생 략)	<u>3</u> .· <u>4</u>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윤리위원회의 <u>위원은</u> 그 직	③위원 또는 그
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u>직에 있었던 자는</u>
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6조의2(변경 심의) ① 동물실
	험시행기관의 장은 연구장소의
	변경, 사용 실험동물 수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안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윤리
	위원회에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
	한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
	<u>다.</u>
	② 윤리위원회의 변경 심의에

<신 설>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의3(심의 후 감독)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7조제 1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되고

② 위원상은 윤디위원외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실험의 내용이 제26조의2제1항의 변경심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즉시실험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없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해당 실험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발생할 것으로 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험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 26조제1항제1호의 심의를 받기 이전에는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실험을 다시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 항의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 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상----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전문위원 심의) ① 윤 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 회의 위원 중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지 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위원 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전문위원으 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진행하 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심의를 진행한 경우 심의 결과 를 즉시 제26조제1항제1호의 심 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친 실험은제26조제1항제1호의 심의 및 변경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이미 심의를 거친 실험의 변경 심의 및 진행상황 보고, 단제26조의2제1항의 사항은 제외한다.

## 2. 종료 보고

-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심의를 진행할 수 없 다.
-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 위윈 심의의 방법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3(윤리위원회 위원 및 연

   구자에 대한 교육의무) ① 윤리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보호 및

<신 설>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저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 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 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 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원과 연구자, 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데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u>동물실험시행기관에</u> 대
하여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u>등</u> 의 사항에 대하여
<u>지도 • 감독</u> .
2
<u>제26</u> 조, 제27조, 제27
조의2 및 제27조의3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 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 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4. (생 략) <u><신 설></u>
- 2. · 3. (생략)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신 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
<u>실험을 한 자</u>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ol> <li>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도・</li> </ol>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기피・방해 또는 자료제

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⑤ (생 략)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제47조(과태료) <신 설>

의 자료를 제출한 동물실험시 행기관의 장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 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 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 행기관의 장
-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변경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4.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심의 후 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5. 제2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

<u>1</u> 1	<b>가음</b>	각	호의	어느	하니	ㅏ에
해당	하는	자	에게는	= 300	만원	(٥
하의	과티	개료.	를 부	과한디		

- 1. ~ 2의6. (생 략)
-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 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 | <삭 제>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 험시행기관의 장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 | <삭 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 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 · 징수한다.

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
실험시행기관의 장
<u>②</u>
·.
1. ~ 2의6. (현행과 같음)
<삭 제>

같음)
<u>⑤</u> <u>제4항</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